

「산업기술 등 보유기업 대상 사이버 기술유출 실태조사」 사이버 기술유출 점검 지원 신청기업 모집

협회는 국가핵심기술 등 우수한 산업 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내부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실태 점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기술유출 점검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국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7. 13.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이 동 범

□ 사업 개요

- (목적) 국가핵심기술 등 우수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환경을 통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안 대책을 지원
 - (주요내용) 취약점 진단 및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통한 기업 맞춤형 보안 대책 제시
 -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사이버상 기술 유출 가능성 점검(약 6일 소요/업체당)
 - 원격에서의 네트워크 장비, 서버, 업무용 PC, 내부망 등 ICT 자산의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여 기술 유출 가능성을 확인 후 보안 대책 제시
 - (모집대상)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 기타 이에 준하는 '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 참여 우대 기업 ①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 ② 국가 R&D 예산이 투입된 산업기술 보유기업

《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광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제외대상) 휴·폐업중인 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골프장 및 스키장,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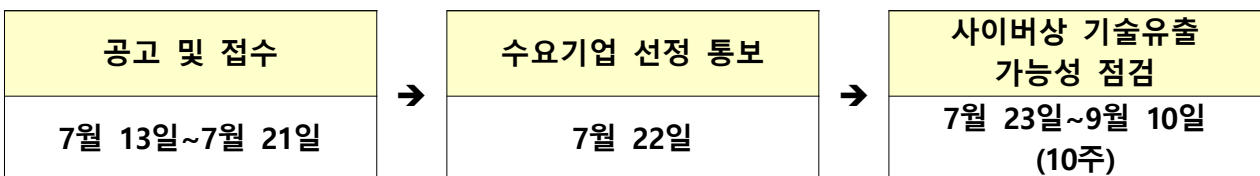
○ (접수기간) **2021. 7. 13. ~ 7.21. / 적합기업 8개사 모집 마감 시 조기 접수 종료**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ljy@kisia.or.kr)

○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확인 서류(자율)

- 신청서 작성,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자등록증, 산업기술 등 보유 여부 증명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PDF)

○ 추진일정



※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술유출 점검은 선정 수요기업 선착순 8개 사와 일정 조율 후 순차적으로 진행

○ (문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산업지원실 사업 담당자

- (TEL: 02.6748.2009) / (E-mail : ljy@kisia.or.kr)

[별첨] 산업기술 등 보유기업 대상 사이버 기술유출 점검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담당자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종업원 수		2020년 매출액	
	담당자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기업 소개	※ 기업의 주요 사업분야, 주요 제품/서비스 현황			
주요 기술	※ 기술유출방지가 필요한 주요 기술 보유 현황(공개 가능 범위에서 작성) ※ 국가핵심기술보유여부, 정부인정 유망/강소기업 여부 등(해당 시)			
신청 사유	※ 해킹, 내부자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 경험,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어려움 등 기술유출방지 및 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작성			
정보시스템 규모	※ PC, 서버 등 ICT 장비 현황 ※ 보안장비(백신, 방화벽, IDS, IPS 등) 현황 ※ 전산 및 IT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 정보보호 담당자 보유현황(전담, 겸직),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여부 등			
향후 정보보호 추진계획	※ 사이버 기술유출 점검 지원을 통해 수립되는 보호대책 실천 의향			
기타	※ 기타 참고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위의 내용과 같이 「산업기술 등 보유기업 대상 사이버 기술유출 실태 조사」의 참여기업으로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기타 '산업기술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자율)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